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22-24호

「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4일

## 강릉시의회의장

###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결정·통보되어 그 범위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 (안 제2조제1항제2호)
  - 월정수당

| 20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4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 27,769,920원<br>(월 2,314,160원) | 2023년도 공무원<br>보수인상률 범위<br>에서 인상 | 2024년도 공무원<br>보수인상률 범위<br>에서 인상 | 2025년도 공무원<br>보수 인상률 범위<br>에서 인상 |

※ 2023년 월정수당: 2,777만원(전년 대비 6.77% 증가)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국 의정계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
  - 주소: (25522)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(홍제동) 강릉시의회
  - 전화: 033-640-4046
  - 팩스: 033-640-4070

붙임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강릉시 조례 제 호

##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2023년 : 연 27,769,920원 (월 2,314,160원)

나. 2024년부터 2026년까지 :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  
서 인상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  
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) ① 강릉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월정수당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2019년 : 연 24,631,320원</u><br/>(월 2,052,610원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2020년부터 2022년까지 :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</u>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| <p>제2조(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) ① 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가. 2023년 : 연 27,769,920원</u><br/>(월 2,314,160원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나. 2024년부터 2026년까지 :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</u>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

□ 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| 제·개정안 내용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  |     |     |